

근골격계과학기술학회

- 특수관계인 공동저자

연구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규정 -

▶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규정

특수관계인 공동저자는 저자가 미성년자(만 19세 이하인 자) 또는 가족(배우자, 자녀 등 4촌 이내)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,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를 말한다. 이 경우,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.

- ① 연구자는 논문 투고 전 반드시 편집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하며, 특수관계인과의 공동 연구 및 논문 공저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.
- ② 특수관계인이 포함된 논문 투고 시, 논문의 교신저자는 개인정보 제공 사전 동의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.
- ③ 특수관계인 연구부정행위 확정시,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,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(입시·진학 관련학교, 연구 관련 기관 등)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.